

부천시의회의원(류재구)징계요구서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03. 7. 5

나. 제출자 : 안익순의원 등 16인

다. 회부일자 : 2003. 7. 7

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일시 : 2003. 7. 7(제105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 구성인원 : 12명

○ 위원장·간사선임 : 2003. 7.7(제105회 정례회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위원장 : 김덕균의원 간사 : 박병화의원

마. 상정 및 의결일자

○ 상정 : 2003. 7. 8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징계자격특별위원회

○ 의결 : 2003.7. 11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징계자격특별위원회

2. 징계요구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익순의원

나. 징계요구 사유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의전차량 사적운행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의 위반하였기에 징계를 요구함.

3. 주요토론 및 심사요지

- 징계요구서에서 요구한 9개항목에 대하여 관계자 증인출석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사실조사와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5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 9개항목에 대해 본 특위의 심사의견을 요약하면 의전차량 사적운행, 향측세트 불특정 다수 배포, 명함과다제작 배포, 의회방문기념품 다량외부 유출, 의회운영책자 제작 특정인에게 우편 발송, 부산영화제 여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요구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사항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중론이었으며,
-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표창장 수여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무직원의 행정처리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본 안전심사에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 그리고 타지역 민원지시 관련은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좋은 취지였으나 지역구 의원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많은 오해와 본 특위에서의 논란이 있었으나 도의적인 책임 문제로 넘기자는 의견이었으며,
- 카이로 영화제 의사팀장 수행에 관한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출장공무원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은 의도로 적법하다하겠으나 수행과 관련하여 도의적인 책임으로 마무리하자는 의견이었음.
- 따라서 징계요구서 9개항목중 표창장 수여, 타지역 민원지시, 카이로 영화제 의사팀장 수행 등 3개 항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외 의전차량 사적운행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와 같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음.

4. 심사결과

- 출석정지30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의회 의원 (류재구) 징계요구서

의안 번호	제 153 호
의결 연월일	2003. 7. 14 (제105회)

제안년월일 : 2003년 7월 5일

제 출 자 : 부천시의회 의원
안익순 등 16인

1. 징계사유

그 동안 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 징계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적용법규

가. 위반규정

-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나. 징계요구 규정

-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제79조
-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3항

3. 참고자료

- 별 첨 -

〈 별 침 〉

1. 의전차량 사적운행

공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의전차량임에도 그 동안 사적운행(지난 대선 당시 부인사용, 의장개인 지역행사인 강원도 이용 등)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그 횟수에 대하여는 차량운행일지가 조작되어 확인 할 수 없음.
(1호차 기사 강문길)

2. 향촉세트 불특정 다수 배포

의장자격으로 향촉세트가 배포되어야 함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코자 하다가 문제가 되어 회수조치 하였고, 전체적인 장례식장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춘의 장례식장에서는 이틀 동안 불특정인에게 5개가 지출되었으며 그 후 사무장의 불만으로 미 설치된 향촉5개는 회수하였음(개당 15,000원, 공통경비, 정양환 팀장)

3. 명함 과다 제작 배포

의장 명함은 그 동안 일만장(아트지 9호)을 105만원(공통경비 55만원, 수용비 50만원)에 대우출판사에 주문 제작하였으며 이중 6,000장을 소비하고 4,000장이 잔고(미확인)로 남아 있음.(정양환 팀장)
명함 제작비는 일반적으로 30만원선에서 거래 되나 105만원에 제작된 것은 일반 통념상 확인 요망

4. 의회방문 기념품 다량 외부 유출

2003년 1월경 의회방문 기념품을 지하주차장에서 반출하는 것이 목격되었음. 확인결과 그 수량은 머그잔 20개라하고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강문길 기사)

5.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표창장 수여

부천시의회 포상규정에 근거하면 포상대상자는 공적심사 위원회(위원장 부의장)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하나 2003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총62건이 심사없이 표창이 남발되었음.

6. 의회 운영책자 제작 특정인에게 우편 발송 여부

2003년 2월경 1,000부를 제작하여(제작비 957,000원)동년 2월 21일 그 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과 연하장을 보내주신 571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우편발송료 262,660원)발송대상자는 확인 할 수 없었음.

7. 타 지역민원 지시사항

부천시 전지역에 걸쳐 총46건을 전문위원실에 연구과제로 지시한 사항임.

8. 카이로 영화제 관련 의사팀장 수행에 관한 적법여부

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시장이며 의장은 조직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카이로 국제영화제는 영화제 사무국장(김민웅)과 류재구위원은 영화제 사무국예산으로 참가하였으며 수행한 허모 의사팀장은 시의 공무국외 여행 허가를 득한 후 시의회 국외여비(4,499,610원)로 지출되었음.
(예산지출 적법성 여부)

9. 부산영화제 여비 문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산영화제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30여만원의 참가여비를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있다가 경기도 감사시 담당 부서인 박형목(문화예술과)팀장이 주의를 받고 최인용과장에 보고하여 최인용과장이 류재구 의장에게 전달하여 반납조치 하였음.